

2015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

학년	학기	교과구분	과목명	학점	개설여부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과목
						자격증 이수	필수	
1	1	공통교양	DU비전설계	1	O			
			DU실용영어(1)	2	O			
		전공선택	사회문제론	3	O		O	
			사회복지개론	3	O	O		
	2	공통교양	DU실용영어(2)	2	O			
		전공선택	사회복지발달사	3	O		O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O	O		O
2	1	전공선택	노인복지론	3	O		O	
			빈곤론	3	X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X			
			아동복지론	3	O		O	
			가족복지론	3	O		O	
			전공필수 사회복지실천론	3	O	O		O
	2	전공선택	DU진로설계	1	O			
			사회보장론	3	O		O	
			사회복지현장의이해	3	X			
			사회복지원서강독	3	X			
			정신건강론	3	X		O	
			사회복지조사론	3	O	O		O
			자원봉사론	3	O		O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O	O		O
3	1	전공선택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O		O	
			사례관리론	3	O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및평가	3	O		O	
			전공필수 사회복지정책론	3	O	O		O
			지역사회복지론	3	O	O		O
	2	전공선택	사회복지법제	3	O	O		O
			다문화와사회복지	3	X			
			사회복지실천기술연습	3	X			
			학교사회복지론	3	O		O	
			장애인복지론	3	O		O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2	O			
			사회복지현장실습	3	O	O		
			전공필수 사회복지행정론	3	O	O		O
4	1	전공선택	교정복지론	3	O		O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X		O	
			중독과사회복지실천	3	O			
			의료사회복지론	3	O		O	
			여성복지론	3	O		O	
			복지국가론	3	X			
	2	전공선택	가족치료	3	O			
			임상사회복지실습세미나	1	O			
			사회복지세미나캡스톤디자인	3	O			
			사회복지실무	3	X			
			사회복지시설운영론	3	X			
			임상사회복지실습	3	O			

★사회복지학과 학사 안내★

1. 위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과에서 이수하여도 사회복지학과 전공생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됨
예)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산업복지학과에 개설되는 정신건강론이수->전공학점 3학점 인정
※단,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과를 부,복수전공하는 학생은 꼭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는 교과목만을 이수하여야 인정
되므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할 것.
2.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교과목 모두 이수할 것.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같은 교수님으로 신청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2학점이므로 졸업학점 관리에 유의할 것.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내용(실습평가서 등)을 토대로 학점을 인정받음(실제 수업 진행 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실습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피드백 진행(실제 수업을 진행함)
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이수과목과 학과 졸업학점 숙지하시어, 학사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 적용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 · 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보장론, 사회복지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